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명칭변경, 직제순에 따른 내용 수정 및 기금(일몰제도)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관 명칭변경

○ 주민생활지원과장 → 주민복지실장으로 기금운용관 명칭변경

나. 직제순에 따른 내용 수정

○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 → 주민복지실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

다.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.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(안 제5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노인복지법』 제4조,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』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3. 11. 05 ~ 11. 24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❑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

○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명칭 변경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몰제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써

❑ 주요 내용으로는

○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고, 내실 있는 기금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

❑ 본 개정 조례안은

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